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양부남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01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5. 19.

발 의 자 : 양부남 · 김한규 · 김문수
윤후덕 · 한민수 · 윤준병
이정문 · 이춘석 · 이인영
김준혁 · 강준현 · 박정현
박균택 · 전진숙 · 김용만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고속철도 교량 등 제1종시설물과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등 제2종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대통령령은 제2종시설물 중 일정 안전등급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건축물은 안전등급과 상관 없이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.

그런데 야구장 · 공연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체육시설은 많은 이용자가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제1종시설물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보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, 최근 야구장에서 구조물이 추락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 및 집회시설,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건

축물을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, 체육시설을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1항).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제1종시설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”을 “다음 각 호의 시설물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1종시설물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.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제2종시설물에는 제7조제2호마목에 따른 건축물 중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5호 및 제13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과 운동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정밀안전진단의 실시) ① <u>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② ~ ⑥ (생략)</p>	<p>제12조(정밀안전진단의 실시) ① -----<u>다음 각 호의 시설물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제1종시설물</u> 2.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 시설물.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제2종시설물에는 제7조제2호 마목에 따른 건축물 중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5호 및 제13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 시설과 운동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② ~ ⑥ (현행과 같음)</p>